

#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 (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400호
- 다. 제출일자: 2021. 5. 25.
- 라. 회부일자: 2021. 5. 31.

### 2. 제 안 사 유

- 노원구는 당현천 및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주민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함.
-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부지 사용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 가. 토지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772(노원자원회수시설 내 부지)

- 면 적: 40m<sup>2</sup>
- 소 유 자: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자원순환과)

#### 나. 시설개요

- 주요시설: 공중화장실

계	장애인용		남성용		여성용변기
	남	여	소변기	대변기	
12	1	1	3	2	3

- 사 업 비: 300백만원(구비)
  - 화장실 구매 96백만원, 공사비54백만원, 진입로 150백만원
- 사업기간: 2021. 7. ~ 2021. 10.

####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1. 3.: 서울시 토지사용 가능 여부 문의(노원구→서울시)
- '21. 4.: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절차 안내(서울시→노원구)
- '21. 5.: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출(노원구→서울시)

#### 라. 시의회 동의 시, 향후 추진일정

- '21. 7.: 공사 발주 및 시행
- '21.10.: 공사 완료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노원구 당현천과 중랑천변 합류부 시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지〉

### 나. 검토 의견

- 노원구는 당현천과 중랑천을 대상으로 ‘동네하천 재탄생’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하천으로 만들고 있으나,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두 하천의 합류부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1)하고 있음.

현재 시설 설치 추진계획과 예산(3억원, 전액구비)은 확보되어 있으며, 노원구와 서울시 간에 토지사용 가능 여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등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부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일대)는 사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대상 부지 반경 2km 이내 산책로에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축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으며, 공중화장실 설치를 통해 당현천 및 중랑천변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보행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부지 위치도〉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부지 현장 사진〉